

『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곤·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
- 「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
-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”를 구성 운영(안 제3~4조)
- 시장은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행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(안 제5조)
-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가능 (안 제8~9조)
- 사회적 기업에 공유지 임대 가능, 불용물품 등을 무상양여 가능 (안 제11조)

-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. 기술. 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재정지원 가능(안 제12~13조)
-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및 판로 개척 강구(안 제17조)
-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(안 제20조)

4. 참고사항

- 사회적기업 육성법
-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

5. 검토의견

- 『사회적기업 육성법』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
-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“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”를 설치하고
-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시설비 지원, 경영 및 재정지원, 우선구매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고
- 시장은 시 사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 사업을 민간 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 기업에 참여토록 장려하고,
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육성에 참여토록 조치 및 홍보토록 하여

-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